#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07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 허성무·김문수·정혜경

최민희 · 문정복 · 민병덕

송재봉 · 손명수 · 이수진

이광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 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침 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호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제70조(기금의 용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의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u>지원</u>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